## 아동학대 신고 절차 안내

아동학대 개념 및 신고절차

#### □ 아동학대란?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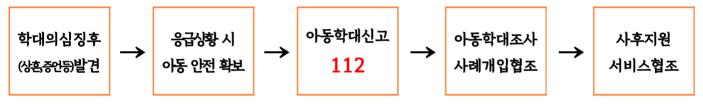
「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」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(만18세 미만)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

#### □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 규정

아동에게 신체적, 정서정, 성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방임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. (제17조 제2호, 제3호, 제5호, 제6호)

#### □ 아동학대 신고 절차

#### ★★아동학대 신고 절차★★



※ 아동학대 의심 정황 발견 시 즉시 관할 경찰서 및 과천시 가족아동과에 신고



- 신고 전화 : 국번 없이 112 / 각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
-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,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.

### 무엇을?



- 신고자의 이름, 연락처
- 아동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
-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
- 아동이 위험에 처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
- ※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.

# 아동학대신고시 유의사항

- 가능한 한 얼굴이 나온 증거사진, 영상 등을 확보한다.
- 아동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한다.
- 성학대의 경우,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다.
-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질문을 하지 않는다.
  (진술 오염의 위험이 있음. 진술오염 시증거 불채택)

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

## 아동학대예방교육 안내

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(edu.ncrc.or.kr)



- 1. 아동권리보장원 사이버교육선터포털 접속
- 2.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3. 전체교육 → 교육신청
- 4. '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(공통편) 수강신청
- 5. 강의 수강
- 6. 수료증 발급
- 2 │ 서울런4050 서울시평생학습포털 (sll.seoul.go.kr/)



- 1. 서울런4050 서울시평생학습 포털 접속 (서울배움e 클릭)
- 2.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3. 온라인학습 → 아동학대예방
- 4. '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(공통편) 수강신청
- 5. 강의 수강
- 6. 수료증 발급
-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(www.gseek.kr)



- 1. 경기도지식 포털 접속
- 2.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3. 검색창에 '아<del>동</del>학대' 검색
- 4. '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(공통편)또는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 및 공 공부문 법정의무교육 수강신청
- 5. 강의 수강
- 6. 수료증 발급